

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라 한다.

제2조(구성 및 기능) ① 위원회는 기획조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(위원장포함)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.

1. 우수업적교원 선정·포상 및 업적급 수립(안)에 대한 심의
2. 교원의 업적에 대한 평가 및 업적평가결과 심의
3. 관련 자료 제출 요구
4. 관련 자료의 보완과 관련자의 의견청취
5. 본 규정의 개정 발의 및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
6. 재심요청 업적에 대한 심의
7.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업적에 대한 심의
8. 기타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소집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필요에 따라 위원 외에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제5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된다.<개정 2007.9.1><개정 2017.09.25>

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할 수 있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8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-4-0-4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